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October
Vol. 46

10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드
재정칼럼
툏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October, 2020
VOL. 46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트

- 정부, 재정책임성·지속가능성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 데이터법 제·개정과 재정정보의 활용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비교를 통한
재정정보 활용 전략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24 · 재정칼럼

- 데이터 3법과 재정정보 활용 전략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 데이터 3법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Trade-Offs
김윤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32 · 톨아보기

데이터 3법 + 1



재정 NOW

- 34**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40**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6** • 키워드 재정
독감
- 50** • 해외재정동향
OECD 중간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재정 STORY

- 56**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62** • 재정 Talk Talk
재정의 기능별 분류란 무엇인가요?
- 64**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틀루즈 로트렉과 상업포스터
- 68** • 경제철학 이야기
제임스 뷰캐넌: 헌법경제학의 개척자
- 72** • KPFIS의 서재
- 74** • 재정 캘린더
- 7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정부, 재정책임성·지속가능성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3% △한도 초과 시 건전성 대책 의무적 마련 △위기 시 면제 및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판을 만들되,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전판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 재정책임성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정치권·언론·학계 등에서는 “실효성 없는 맹탕준칙”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지금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가 아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의견 수렴 및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안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지금까지 형성된 주요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1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내용

①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할 목표 지표에 따라 △채무준칙(나라빚 규모 통제) △수지준칙(특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관리) △지출준칙(지출 증가를 제한) △수입준칙(수입의 최고·최저한도 규제) 등 4가지로 나뉜다. 전 세계 92개국이 이미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② **왜 도입하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19년 37.7%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기준으로 43.9%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2.8%였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올해 -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여기에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다¹. 또한 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개별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도입배경이다.

③ **준칙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 등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첫째, 준칙성은 국가채무 비율 60%(채무준칙)와 통합재정수지 -3%(수지준칙)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렇게 두 지표를 동시에 제한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다². 아울러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둘째, 보완성은 경제위기와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수치적 한도(60%, -3%)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수치적 한도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식이다. 제한 수치가 경직되게 운용돼 재정의 근본적 역할을 제약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 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해 나가고 4년 차부터는 전부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³. 추가로 준칙 적용 면제 상황에 이르는 않았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3% → -4%)할 수 있도록 하였다.

¹ 정부는 오는 2024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6%,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6%로 전망하고 있으며, 2060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64.5~81.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²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3%) ≤ 1.00이다.

³ 채무 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 위기 시 0%, 1년 차 25%, 2년 차 50%, 3년 차 75%, 4년 차부터 100%

셋째, 실효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준칙 적용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정했다.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산식 등 수치적 한도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담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수반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과세수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확대(30→50%)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준칙 도입 방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된 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_____ 정부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정치권, 언론,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시행령에 담을지, 법으로 정할지 △한도가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보완산식에 문제는 없는지 △준칙 면제요건이 적절한지 △도입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등 5가지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쟁점별로 비판 요지와 정부 설명을 연구자적 관점⁴에서 정리·소개한다.

① 법제화 형식 _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vs “법에 담아 구속력 강화해야”

정부안대로 주요 목표 수치를 시행령에 담을 경우 “정부가 필요에 따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준칙으로서 제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비판 요지다. 법에 명시해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은 굳이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 형식을 띠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재정준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아예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도 법률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다가, 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법보다 시행령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민 다수가 원하면 법에 담을 수 있다”며, 법제화 형식에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② 한도 적정성 _ “60% 이를 때까지 평평” vs “이미 60%가 코앞이라 느슨하지 않아”

재정준칙의 수치적 한도(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차례 추

⁴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예컨대, 재정준칙 선결조건과 전제조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합리적 대안, 건전한 한국 재정을 위한 담론 등에서 재정준칙에 관해 연구했다.

경을 거쳐서 43.9%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한도를 60%로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도 60%에 이를 때까지 ‘평평’ 쓰겠다는 것이며, 이 경우 재정준칙이 아니라 면죄부준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에 낸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듯이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지출수요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지출 탓에 그냥 두어도 2024년에 58.6%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이미 -4.4%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준칙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③ 보완산식 _ “보완산식 악용해 고무줄 계산 가능” vs “이중 규제로 봐야”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수치적 한도를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재정준칙을 충족시킨다. 즉, 두 지표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정부는 채무준칙과 수치준칙 등 2종의 규율을 받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미 두 준칙 모두 여유가 없거나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여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④ 면제·완화 규정 _ “구멍 송송” vs “재정의 근본적 역할 막으면 안돼”

정부안은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시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p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외규정이 너무 폭넓거나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면제·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 경제위기 시에도 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면제조항을 갖고 있으며⁵,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면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심각한 상황에서만 면제를 적용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할 계획이다.

⑤ 도입시기 _ “차기정권에만 적용한다는 것” vs “사실상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도준수를 위해서는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서는 “현 정권에서는 제약없이 쓰고, 다음 정권에서나 준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제대로 지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며, “또한 2022년 예산안을 짤 때부터 준칙을 의식해 적자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⁵ (독일)경기변동-자연재해, (미국)국제테러-재난지원, (이탈리아)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 (EU)심각한 경기침체.

데이터법 제·개정과 재정정보의 활용

「전자정부법」과 「공공데이터법」 수준에 머물던 우리나라 ‘데이터 행정’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연말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밝힌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 구축의 최종 귀착지도 데이터 행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이 공공데이터의 가치 사슬, 특히 재정정보의 분석·제공·활용에 미칠 영향을 가능해보고자 한다.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hyein@kpfis.or.kr)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들의 행위, 경제적 상황, 상호작용 등에 의해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수집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더 큰 시장을 점유한다. 데이터가 자본, 노동을 능가하는 경제요소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이른바 ‘데이터 경제’다.

경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적·사회적 가치 창출도 데이터에 의존한다. 특히 행정에서는 이제 경쟁력의 원천이 완전히 데이터로 옮겨갔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 데이터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원(Resource)으로서 또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로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관측하지 못한 사회 현상을 메타데이터로 예측·분석하고, 기계학습을 활용한 일상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활용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칸막이와 개인정보 보호 탓에 개방 및 활용이 미흡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석·활용 수준은 64개국 중 40위에 그칠 정도였다.

다행히, 올 들어 정부·국회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졌다. 올 초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이하 데이터 3법)이 개정돼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 6월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향후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갖춘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에서 밝힌 △데이터 댐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지능형 정부 등의 계획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액션플랜 격이다. 하지만 공개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활용 의지가 증대해졌다는 것이 데이터의 쓸모, 즉 유용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특히, 데이터의 원천이 다변화되고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급증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 3법 개정안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가 재정정보의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최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8월 시행되었다¹. 여기서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여 말한다. 각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한 활용 범위 확대, 데이터 처리 안전망 구축 등이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¹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였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4일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쳐 8월 5일 시행되었다.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접근이 어려웠던 금융정보, 부동산정보, 건강보험정보, 의료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 간 결합·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으로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소비패턴, 재무현황,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 및 신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관련 내용의 이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정·공포되었다².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의 의무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의 구축 등이다.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요청 시 원칙적으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다부처 연계 정책 현안을 분석하여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데이터 관계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데이터 3법 등 주요 내용 요약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추진경과	•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5일 시행	•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 12월 20일 시행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한 활용 확대, 데이터처리 안전망 구축 •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내용의 이관	•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 의무화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의 구축

기존에도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전자정부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서 각각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해 왔으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방대한 공공기관 데이터의 기관 간 연계 및 활용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과 함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방대한 행정정보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정보, 의료정보, 금융정

² 2020년 5월 20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6월 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 부동산정보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연계와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초석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3 ————— 데이터기반행정과 재정정보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행정 혹은 정책과정이 데이터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주로 서베이 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북유럽과 영미 등을 위주로 전 인구 또는 모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행정 빅데이터의 구축 또는 행정자료 간 결합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연구가 확산되고 있다³.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인의 기회 연구(The American Opportunity Study)” 프로젝트의 경우 196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총조사 데이터와 미국공동체조사 데이터를 여러 행정데이터와 사회보장데이터 및 서베이 자료 등과 연결하여 대규모 패널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세대 내/세대 간 소득, 교육,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다양한 장·단기 효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으로 보다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결합 생산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공공데이터 간 융합이나 서베이 데이터와의 연계 활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나라살림과 관련된 재정정보의 경우 증거기반 정책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는데, 재정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양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정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

재정정보는 연구자가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얻은 서베이 데이터와는 달리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고 행정 목적에 의해 생성된 자료이다. 특히, 재정정보는 예산 편성·심의·확정부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되며 각각의 주체도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한 속성값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의나 기준이 사용되기도 하고, 데이터에 따라서는 정합성이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는(예를 들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내 재정사업 정보에는 일자리사업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 등 데이터기반행정이나 정책결정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보도 적지 않다. 올해, 12월부터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 공공기

³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 국민 등록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의료 등 국민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행정자료를 구축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행정자료를 자각을 갖춘 연구자들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⁴ 대표적으로 국가재정의 예산, 기금, 결산, 세입·세출 운용 상황, 사업설명자료,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 통합재정수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예산, 재무제표, 채권관리, 기금운용, 공유재산,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이 있다.

관 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요청받은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합성이나 완결성 등이 완전하지 않아 정책연구 목적으로는 부적합한 정보들까지 무조건적인 확산 및 공유될 여지가 있다⁵. 한편, 정책(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으로 재정정보의 활용 범위를 높일 필요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정보 산출 및 공개를 규정하는 법률 및 거버넌스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정보 주체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이나 양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보안 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Official)’, ‘중요기밀정보(Secret)’, ‘일급기밀정보(Top Secret)’의 3단계로 나누고, 대다수 정부의 자료는 가장 보안수준이 낮은 공공데이터로 구분하여 개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만하다. 현재 ‘열린재정’에서 ‘지방재정365’ 자료를 연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공개 서버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오는 수준으로 재정의 통합 공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공개 주체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들 간의 메뉴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의나 기준을 사용하여 데이터 결합·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4 _____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

재정정보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대표적인 행정데이터로 예산 편성·심의·확정, 집행, 결산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되며 운용주체가 다른 등 일반 행정정보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정정보 융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국가 차원의 재정정보 이슈에 대한 재정 데이터 주체들의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도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예산관리국

⁵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데이터 분석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재식별 위험에서도 마냥 안전할 수만은 없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재정정보의 표준 연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지침의 준수 여부와 연방 정부가 제공한 재정정보의 정합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의 통합적 관리 권한을 갖고 메인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재정에 특화된 재정 전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정보의 표준화, 보안 단계 설정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세워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여러 재정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놓는 물리적 장소로서 데이터의 공유와 검색의 용이성 등에 초점을 맞춘 ‘재정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재정정보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다부처 연계 정책 현안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영역 내에는 이미 중앙, 지방, 교육재정정보 등을 취급하는 여러 기관들과 시스템이 존재하며 각 시스템들은 별도로 대폭적인 기능개편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재정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이 센터를 통해 연구 목적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정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생성 시 설계 과정 등에서 기관 간 사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유사하게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 개념을 도입하는 등으로 향후 생산되는 재정데이터는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데이터는 수집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도 중요한데, 데이터 거버넌스는 모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데이터 운영 기관은 통계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KPFIS-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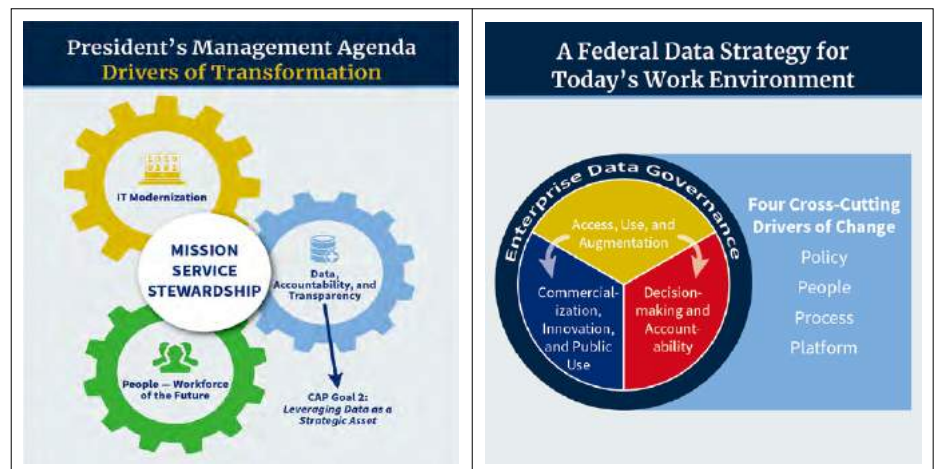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비교를 통한 재정정보 활용 전략

미국은 '2020년 연방 데이터 전략 시행계획(Federal Data Strategy 2020 Action Plan)'을 근간으로 공공데이터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2020~2022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과 연계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공공데이터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었는데, 공공데이터 전략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연방 데이터 전략'과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서 밝힌 주요 추진과제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정보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_____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공유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하여 이를 민간·연구자·기업이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데이터의 책임성 및 투명성, 미래의 사람과 일자리, IT 현대화 등 3가지 핵심 분야를 국정 아젠다(President Management Agenda, 이하 PMA)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PMA에 근거하여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을 이행하고 있는데, 데이터 표준화, 상호 운용성, 데이터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전략체계



자료: Federal Data Strategy(2020), 「2020 Action Plan」

미국의 2020년 연방 데이터 전략은 10개 원칙, 40개 모범사례(Best Practice), 20개 과제로 구성된다. 모든 연방정부 기관과 하부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방 데이터 전략¹이 지정한 40개 사례와 연관된 과제(20개)를 추진하고 있다.

¹ 연방 데이터 전략은 개별 기관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관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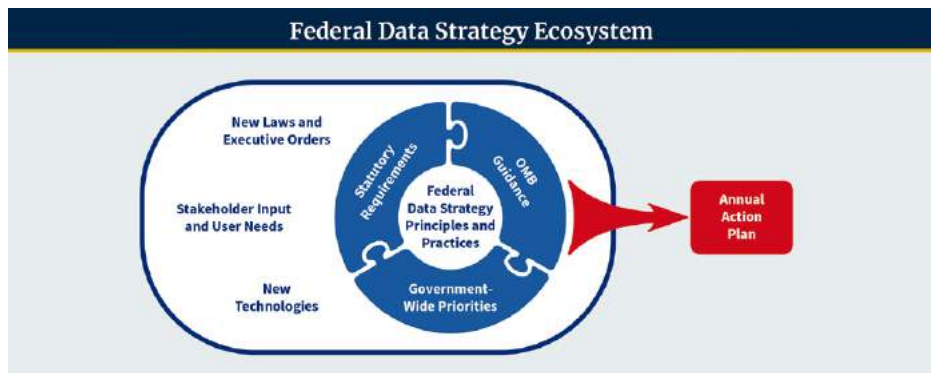
그림 2. 연방 데이터 전략체계



자료: Federal Data Strategy(2020), 「2020 Action Plan」

연방 데이터 전략체계는 데이터 전략 원칙과 사례를 법적 요구조건,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가이드라인(Guidance)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법률과 행정명령, 이해관계 및 사용자 요구, 신기술 등을 구체화하여 연간 추진과제(Annual Action Plan)를 선정하고 있다.

그림 3. 연방 데이터 전략체계도



자료: Federal Data Strategy(2020), 「2020 Action Plan」

2020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은 「2018년 증거기반 정책결정법²과 「2018 지리 공간 데이터 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은 ① 6개 기관 과제, ② 4개 커뮤니티 과제, ③ 10개 공동해결책 과제 등 총 3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² 이 법은 2019년 1월 의결되었다(Short-Titl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세부구성은 다음과 같다.
Title I: Federal Evidence-Building Activities, Title II: OPEN Government Data Act, Title III: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Title IV: General Provisions.

기관 과제(Agency Actions)는 모든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기관의 능력개발에 주안을 둔다. 또한, 데이터가 기관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가이드 라인을 strategy.data.gov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저장소(Data Repository)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과제(Community of Practice Actions)는 데이터 전략과 관련된 기존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합 추진할 과제로, 기존 협동 메커니즘 및 위원회 등을 매개로 특정 기관이 수행한다.

공동해결책 과제(Shared Solutions Actions)는 모든 기관의 이익을 고려하지만, 통상 단일 기관이 고유 과제로 수행한다. 다만, 모든 기관이 활용 가능한 범정부 차원의 리더십, 정책 방향, 거버넌스 등 데이터 전략 수립에 포함해야 한다.

표 1. 연방 데이터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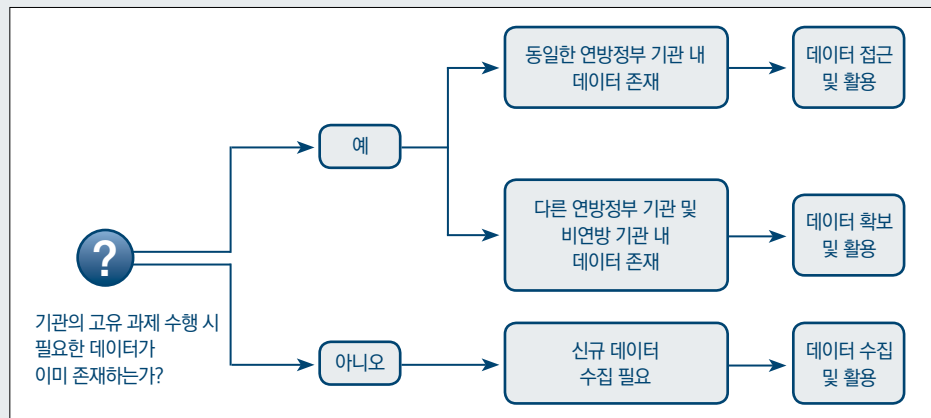
구분	번호	추진 과제
기관 (6개)	A1	기존과제 수행 시 필요한 데이터의 선제적 발굴(~2020.9.30)
	A2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 구성(~2020.1월)
	A3	데이터 및 데이터 관련 인프라 성숙도 평가 진행(~2020.7.31)
	A4	담당자 데이터 역량 강화 방안 모색(~2020.7.31)
	A5	기관 공공데이터 계획에 따른 중점 데이터 선정(~2020.1.31)
	A6	데이터 인벤토리 개방 및 업데이트(~2020.6.30)
커뮤니티 (4개)	A7	연방 데이터 최고책임자 위원회 출범(~2020.1.31)
	A8	AI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선(~2020.2.29)
	A9	재무 관리 데이터의 표준화 개선(~2020.9.30)
	A10	연방 데이터 산업에 지리 공간 데이터 통합(~2020.12.31)
공동해결책 (10개)	A11	연방정부 데이터 자원 저장소 개발(~2020.12.31)
	A12	연방정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신설(~2020.1.31)
	A13	데이터 역량 카탈로그 개발(~2020.2.29)
	A14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2020.12.31)
	A15	데이터 보호 톨킷 개발(~2020.12.31)
	A16	원스톱 표준화 포털 시범 연구(~2020.3.31)
	A17	데이터 인벤토리 개발 지원을 위한 자동 톨(Tool) 시범 개발(~2020.7.31)
	A18	연방정부 기관을 위한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 톨(Tool) 시범 개발(~2020.9.30)
	A19	데이터 품질 측정 및 보고 가이드 개발(~2020.9.30)
	A20	데이터 표준화 저장소 개발(~2020.12.31)

자료: Federal Data Strategy(2020), 「2020 Action Plan」에서 발췌

미국의 2020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중 주요 과제를 선별하여 설명하면, 데이터의 선제적 발굴(Action 1),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 구성(Action 2), 데이터 담당자 역량 강화(Action 4), 기존 데이터 인벤토리 개방 및 업데이트(Action 6), 데이터 최고책임자 의무 강화(Action 7), 데이터 표준화 저장소 개발(Action 20) 등 디지털 정부 혁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신규 데이터의 선제적 발굴(Action 1): 기존 고유 과제 수행 시 신규 데이터를 발굴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다만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기관이 고유 과제를 수행할 경우 데이터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신규 발굴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그림 4. 데이터 수집체계



자료: Federal Data Strategy(2020), 「2020 Action Plan」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 구성 및 공개(Action 2): 모든 기관이 법에 기초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Data Governance Body: DGB)를 설립하고, 관련된 모든 문서(데이터 관련 회의록 등)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담당자 역량 강화(Action 4): 「증거기반 정책결정 법」과 「최고재무관리자 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CFO Act) 관련 모든 기관은 데이터 담당자의 역량 평가의 범위, 품질, 방법, 효과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역량 평가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기관의 데이터 담당자 역량 평가는 ① 기관 과제 수행 시 필요한 담당자의 데이터 역량을 도출, ② 데이터 담당자의 데이터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 ③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 역량 및



기관 담당자의 데이터 역량 편차 분석, ④ 분석결과에 기초한 데이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이 수행해야 할 세부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기존 데이터 인벤토리 개방 및 업데이트(Action 6): 모든 기관이 통합 데이터 인벤토리를 연방정부 데이터 포털의 개정된 표준 메타데이터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모든 기관은 90일 주기로 기관 통합 데이터 인벤토리 점검을 통해 인벤토리에서 누락 또는 미가공 된 데이터들을 보완해야 하고, 중점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우선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 최고책임자 의무 강화(Action 7): 데이터 최고책임자(Chief Data Officer, 이하 CDO) 위원회를 출범하고, 데이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 사용자 의견수렴,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신기술 선정 및 평가 등 데이터 관련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 표준화 저장소 개발(Action 20): 공공서비스행정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소관으로 국가표준기술원(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과 협력하여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저장소를 개발한다. 특히, 모든 데이터의 표준화(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등) 정보를 포함하여 resources.data.gov와 연계될 예정이다.



2 한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³

우리나라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또한 「제3차(2020~2022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⁴」을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세부 이행계획(연 단위)’을 추진하고 있다.⁵

표 2.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추진 과제 (11개)		미국 FDS와 연관성
T1	국민·수요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1, A2, A8
T2	주요 분야별 융·복합 데이터 구축·개방	A1, A8
T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및 표준화 추진	A10, A19, A20
T4	공공데이터 포털 및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A1, A6, A18
T5	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A1, A2
T6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거래 인프라 구축	A2
T7	공공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	
T8	국민주도형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개선	A1, A2
T9	공공데이터 제공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T10	공공데이터 분야 국제협력 추진	
T11	공공데이터 전문역량 강화	A3, A4, A1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반영하고, 기민한 공공데이터 수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내(49개 데이터), 민간-공공 간(146개 데이터), 신기술 관련 융·복합 데이터(26개 데이터)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관·분야별로 표준화한다. 범정부 메타시스템 확대 및 의미기반 연관관계를 활용하여 국가데이터맵 검색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해외진출 등 전 과정

³ <http://www.odsc.go.kr/home/homeIndex.do>

⁴ 3년마다 수립(「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2019.12.)

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45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등 총 62개 기관을 의미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거래가 가능하도록 데이터프리존·거래소 구축 및 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본계획)와 조직(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을 마련한다(「데이터기반행정법」과 관련).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보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0.8)에 따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명처리, 익명화) 및 제공·활용 확대,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은 최근 공포된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 법률의 궁극적 목적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목적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제 기관별로는 데이터의 공개를 넘어 요청하여 제공받은(요청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제공)할지에 관한 지난한 숙제가 남겨졌다.

3 ————— 공공데이터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미국은 공공데이터 전략을 기관 과제, 커뮤니티 과제, 공동해결책 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외형적으로는 전략체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기관 중심 또는 공급자 위주의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⁶. 중·장기 관점에서 연방 데이터 전략에 기초하여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과 그 역할⁷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미국의 CDO와 같은 데

⁶ 미국의 연방 데이터 전략은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범부처 우선순위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략팀(참여자 82명)이 구성되어 공적 행사(47건)와 의건 수렴(601건) 절차를 거친다.

⁷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이터 최고책임자 역할을 강화해 공공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최고책임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제공책임관 커뮤니티를 조성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 담당자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데이터 담당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우선 도출하되,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데이터 교육·실습 등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둘째, 데이터 유관 위원회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데이터 정책 유관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데이터기반행정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위원회의 분절적 운영으로 기능 및 역할 중복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관련 과제를 협업(협력적 거버넌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_____ 재정정보 활용 전략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융·복합데이터의 구축, 데이터기반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그 방향성은 맞지만, 그 데이터가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데이터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연계하여 재정정보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 3법(가명정보 처리 등)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법적 조화가 요구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포괄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고, 행정데이터와 재정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확보한 데이터를 가공이나 분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한만 있다. 따라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활용 방식을 규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정성호·전주열, 2020).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⁸에서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활용한다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절차와 조건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시행령 등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구자에게 학술 연구 및 증거기반 정책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데이터 연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정성호·전주열, 2020).

셋째,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으로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보관(등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될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어떻게 현행화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도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행정(공공)기관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을지(반대의 경우도)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전략이 그저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지름길(Short-Cut)은 없는 법이다. 길고 멀고 험난한 길을 떠나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전략 이행의 실질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Federal Data Strategy(2020), 「2020 Action Plan」
- 관계부처 합동(20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 정성호·전주열(2020), 「데이터기반행정법과 증거기반정책결정」, 한국비교정부학회보, 24권 3호

데이터 3법과 재정정보 활용 전략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shmyeong@inha.ac.kr)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발표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학계가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촉구했던 법 제도가 이제 마련된 것이다. 올해 초 1월 9일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중복역할을 정리하여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서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화와 디지털 가속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중 핵심 과제는 단연 데이터 댐의 구축이다.

데이터 댐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기반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공공기관 간, 정부와 민간, 정부와 시민 간 데이터가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되고 유통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데이터 댐을 구축하려면 기획-통제-집행력을 갖춘 강력한 추진체제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카카오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플랫폼과 개인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생성되는 플랫폼 기반 데이터 유통 서비스이다. 데이터 댐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카카오는 기존의 서비스와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한국 디지털 공유경제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정보 관리를 위한 '재정 데이터 댐'도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가능하다. 사실 청년 인력을 데이터 코딩과 입력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여 23조 9,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약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방·공모 직위를 520개로 확대하여 개방된 협업체계와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일찍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에 시행되었고, 그해 11월에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데이터 3법과 디지털 뉴딜 계획이 발표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재 코로나19 시대가 과거의 정보화시대와 다른 점은 이미 초연결 융합사회가 시작되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과 모바일 시대로 전이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혁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중앙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기반의 '열린재정', 243개 자치단체는 e호조 기반의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은 '교육재정알리미'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다. 데이터는 저장하여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잘 정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공공자원이다. 재정 관련 데이터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가의 재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될 목적으로 관리되면 '재정정보'가 되는 것이고, 재정정보가 국가사업과 다양한 재정활동, 그리고 주요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고도화되면 재정정보시스템이 된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시스템을 넘어서 산재되어 있는 재정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유통되어야 하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통합재정정보플랫폼'의 개념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단일화된 법령 체계하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담당조직을 일원화하였다. 우선 재정정보 공개는 「연방재정책임성 및 투명성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FFATA), 「디지털책임성 및 투명성법」(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정보공개 창구는 USASpending.gov로 단일화되어 있고 연방지출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사업자 등의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보화시대부터 지능 정보화시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전자정부 및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 공유, 디지털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재정책임성 및 투명성법」에 의한 정보공개 정책은 관리예산처, 그리고 「디지털책임성 및 투명성법」에 의한 정책은 관리예산처 주관하에 재무부와 업무를 분담하여 재정정보 공개의 추진력과 책임성을 확보하였다. 영국도 내각 사무처에 일원화하여 정보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 영국 모두 개별 부처, 지방정부 등 재정 관리주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관리 체계는 각각 관리예산처, 내각 사무처로 일원화하여 단일의 사이트에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정보의 신속성, 신뢰성, 투명성, 민주성, 정확성,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은 정보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에 있다. 재정과 관련된 정보자원관리는 곧 통합재정정보플랫폼을 필요로 하며, 미국의 DATA Act Broker처럼 전문적으로 데이터 표준과 지침, 시범사업 운영, 평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재정정보관리 주체별 사업단계 정보를 취합하여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상호 간 정확도를 체크하고 부처의 검증을 거쳐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정보 공개에 대해 미국의 회계감사원처럼 주기적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신뢰성과 정합성(Integrity)을 제고하여야 한다.

데이터 댐 사업의 핵심 분야인 재정정보 댐을 잘 구축하려면 정보자원관리 체계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이 기본 조건이라는 기술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전문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적인 시각이 반영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기대되는 시점이다.

참고 문헌

- 박정수(2019),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정정보원
- 미국 USA spending 포털(<https://www.usaspending.gov/>)
- 미국 beta USA spending 포털(<https://beta.usaspending.gov/>)
- 영국 재정정보시스템 OSCAR 포털(<https://data.gov.uk/dataset/oscar>)



— ② —

데이터 3법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Trade-Offs

김윤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yzk46@psu.edu)





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일 것이다. 조세, 정부보조금, 건강보험, 범죄기록 등의 민감 데이터부터 서비스 만족에 대한 개인 선호까지 정부가 수집하지 않는 종류의 데이터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수집된 행정 데이터는 법률 또는 규정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된 후 폐기되고, 보관된 데이터가 재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행정데이터는 민간데이터에 비해 제약이 많았기에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행정데이터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라기보다 단순한 물리적 파일로 인식되었다.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기반이 화제의 중심이 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행정데이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 시행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성공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K-방역의 저력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 개별 데이터 조각들을 가공해 필요에 맞는 가치들을 재창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세 가지 법을 통칭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규제로 인한 데이터 경쟁력의 저하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적합한 합리적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관리 인프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이 부처별로 운영되어 일관성 있는 법률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련 법률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들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많아져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려웠다.



**개인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잠재가치가 부각될수록
느슨해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의 확대에 있다. 개인정보 개념을 기존 개인정보 이외에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포함한 세 가지 정의로 구분한 데이터 3법의 특징은 가명정보에 있다. 가명정보란 정보주체인 특정 개인이 확인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정보를 의미한다. 가명정보에 한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명 처리된 개인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의 변형 없이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리스틱(Heuristic) 익명화, 암호화, 교환 등의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어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도 공개정보가 누적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개인정보의 재식별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해당 목적이 과학적 목적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데이터의 가명처리 전제는 의료정보 등의 민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높다.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결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의 처리 실태도 위원회가 감독한다. 가명정보 결합이 정착될 때까지는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민간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 대상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기관의 신청에 의해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분석 후,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반출목적의 적절성, 개인정보 식별여부, 보유기간, 반출목적 달성 이후 데이터 파기 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반출을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가용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접근 권한, 정보접근 기록과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에 관한 책임소재와 사후관리 등의 사항들도 구체화함으로써 법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및 보안사고 발생에 관련 문제점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데이터 시대에 맞게 데이터 활용에 무게를 두고 개인정보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비록, 개인정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만 활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수집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가처리의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련성, 수집한 상황과 처리관행의 예측 가능성 정도,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에 무해성, 가명처리로 추가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가명처리의 우선순위 등을 제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추구하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을 해결하면서 안전한 정보보호가 일정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개인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잠재가치가 부각될수록 느슨해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제정되었지만 공공부문이 보유한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부처 간 활용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남용과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있다. ‘공익 목적’은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절대 가치는 아닐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빅 브라더’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효과적 데이터 활용이 완벽한 균형상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바람일 것이다. 전례 없이 어려운 이 시기에 데이터와의 전쟁을 위해 정부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정하고 개선해 가는 데이터 기반 문화를 기대해 본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데이터 3법 + 1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

◎ 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허용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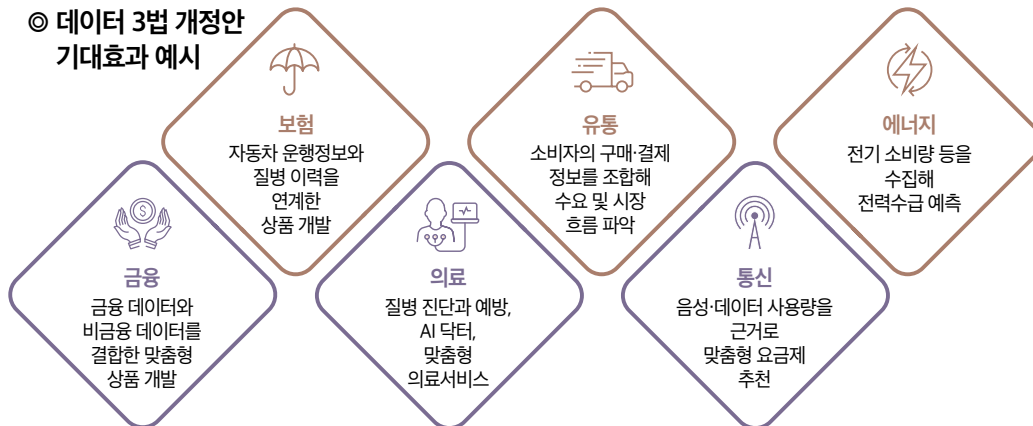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산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 관행 정착
- * 정보활용 동의 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 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 금융회사 등에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관한 설명 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 * 예: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 데이터 3법 개정안 기대효과 예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데이터기반행정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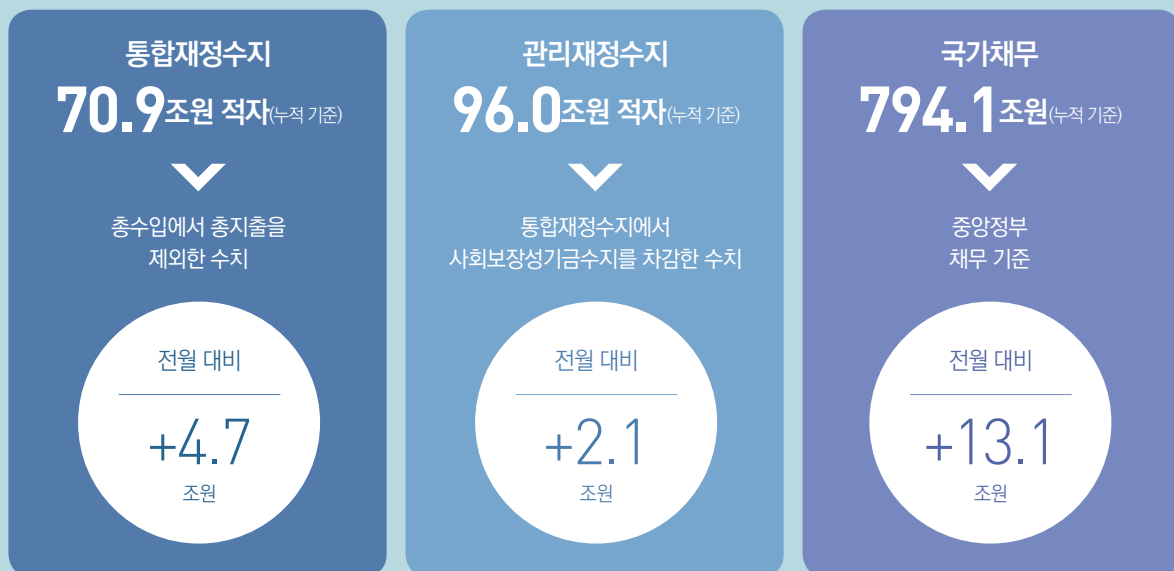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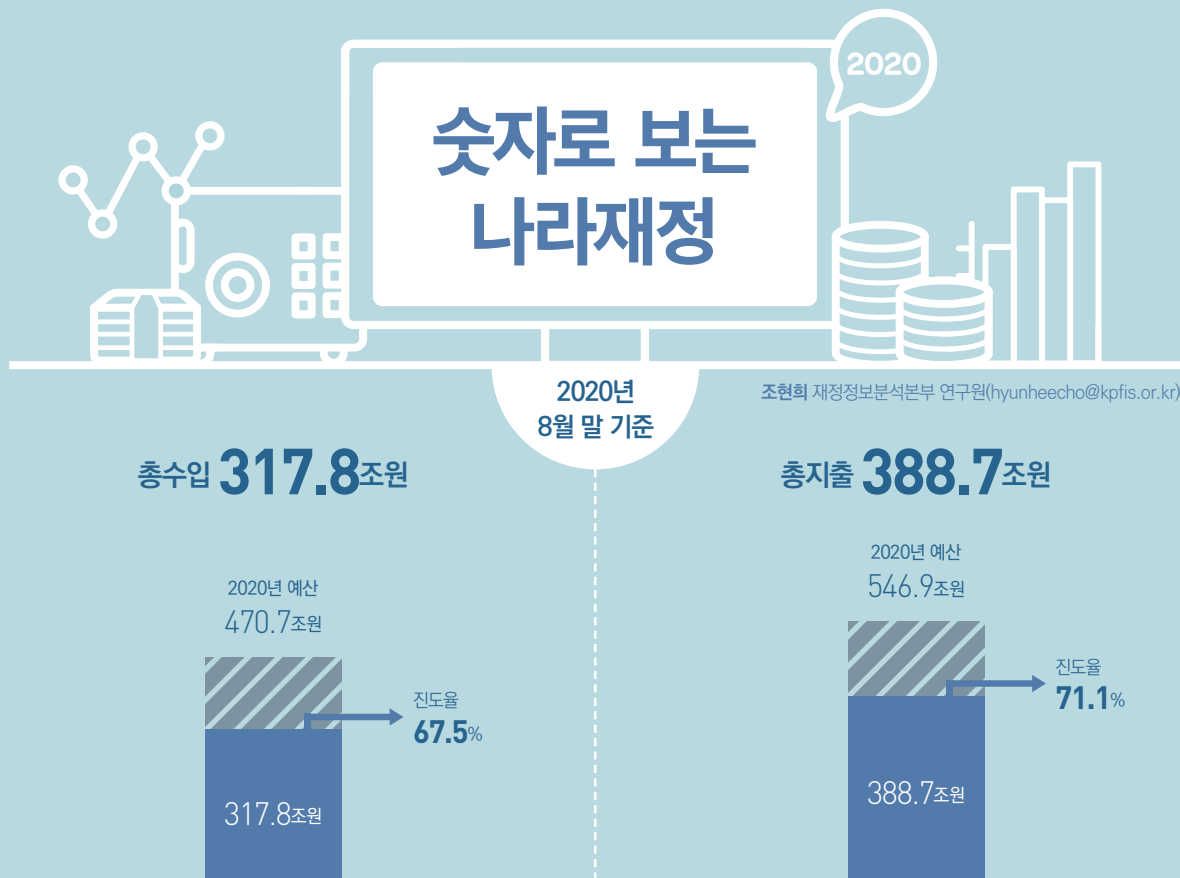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대응성·신뢰성 제고

◎ 「데이터기반행정법」 주요 내용

추진 체계	○ 체계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 민간위원장,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 거부 등 심의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등록 ○ 등록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용목적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 요청 ○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제공 의무화 *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인프라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메타데이터*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공동활용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다부처 연계 정책 현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 「데이터기반행정법」 활용 분야 예시





주 1)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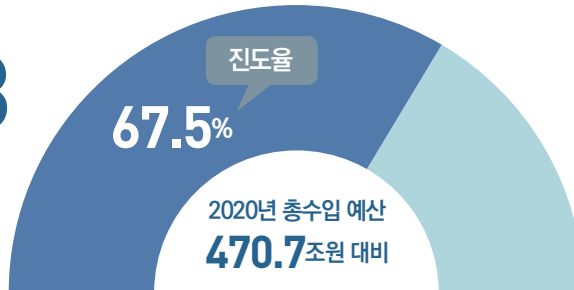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10.

총 수입

• 2020년 8월 말 기준

총수입
317.8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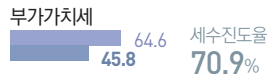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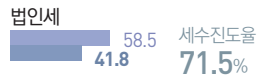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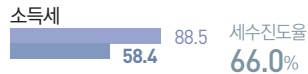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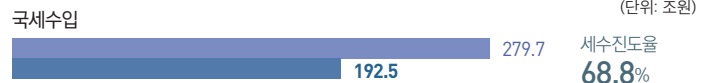
전월 대비
+37.4
조원

전년 동기 대비
-8.8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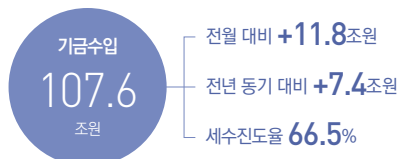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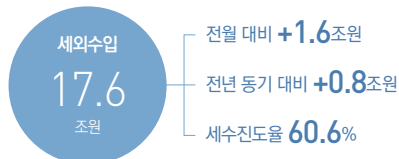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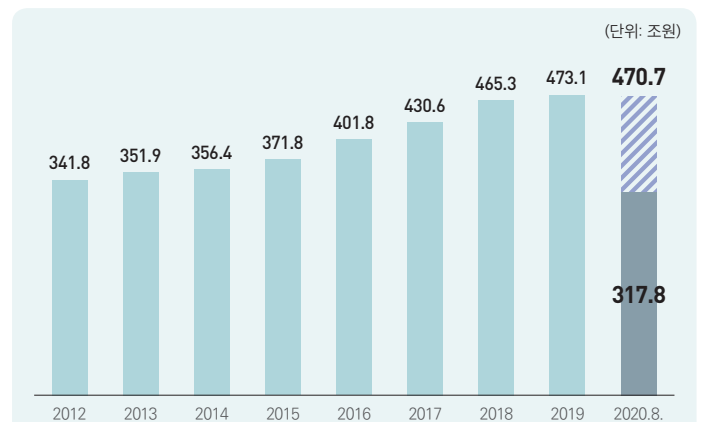
■ 2020년 예산
■ 2020년 8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64.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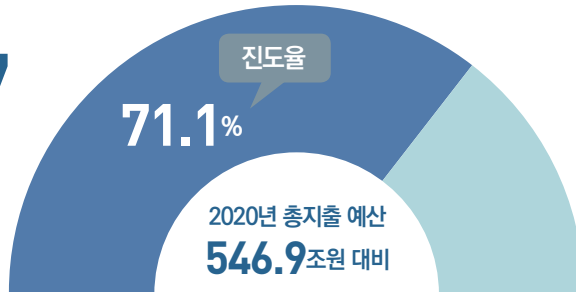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8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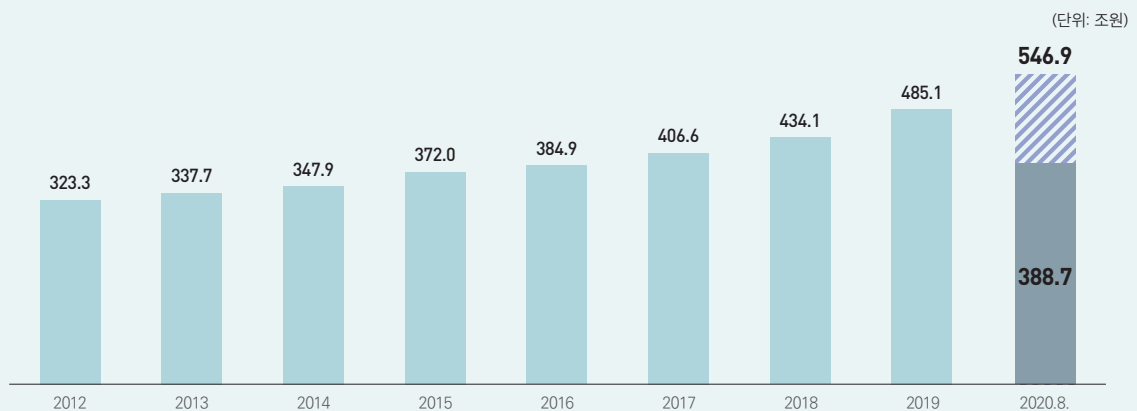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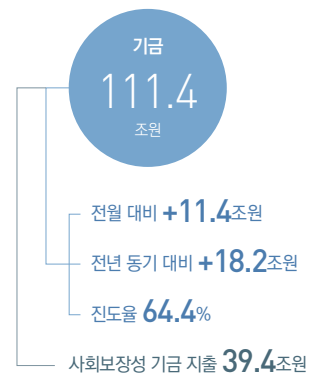
총지출
388.7
조원



전월 대비
+32.7
조원

전년 동기 대비
+39.8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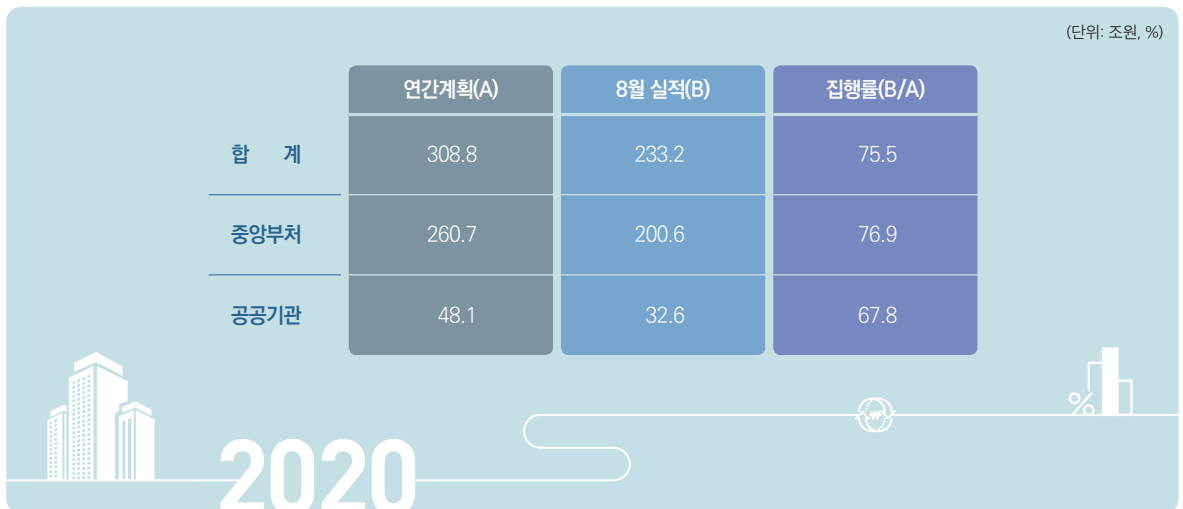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75.5%**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8월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12.4	87.5
2	산업통상자원부	6.8	85.9
3	고용노동부	5.3	84.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	83.3
5	행정안전부	39.2	82.0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8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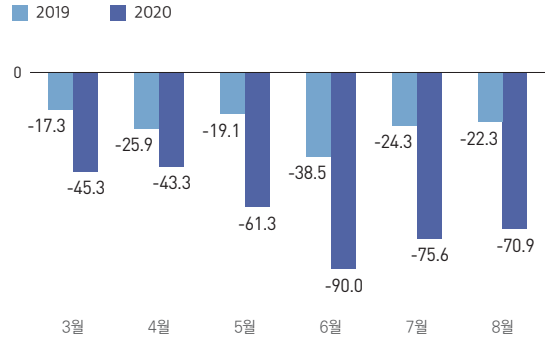
70.9조원 적자

전월 대비

+4.7
조원

전년 동기 대비

-48.5
조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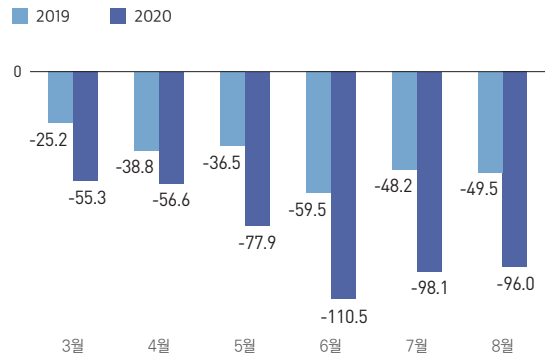
96.0조원 적자

전월 대비

+2.1
조원

전년 동기 대비

-46.5
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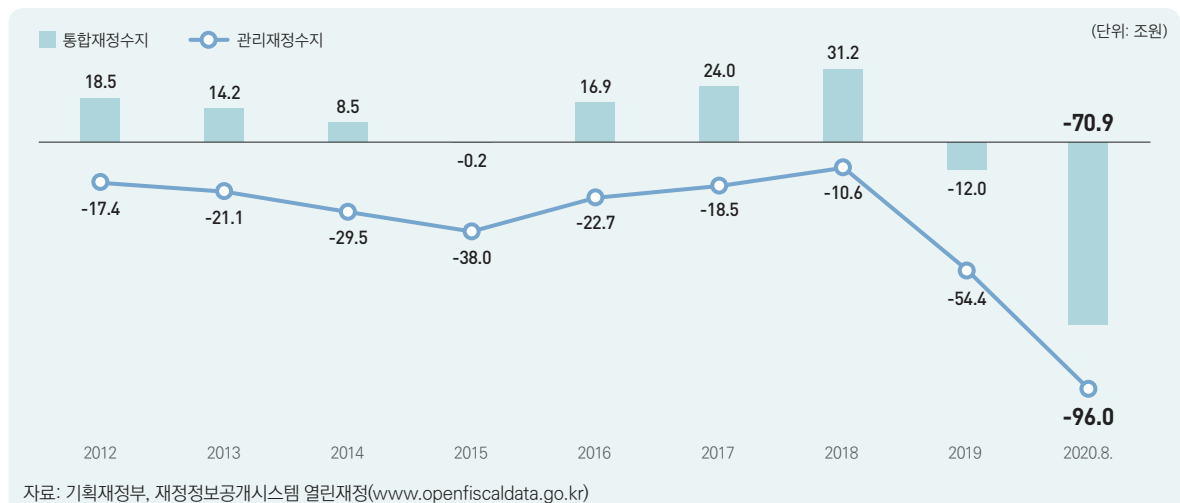
25.1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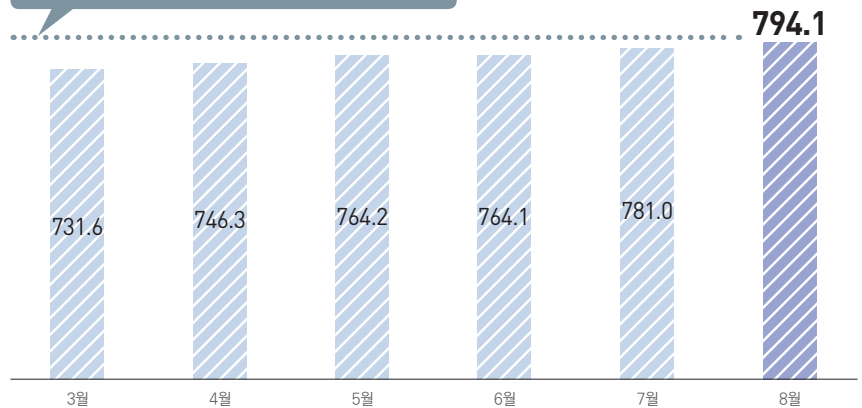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94.1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7.4조원



전월 대비

+13.1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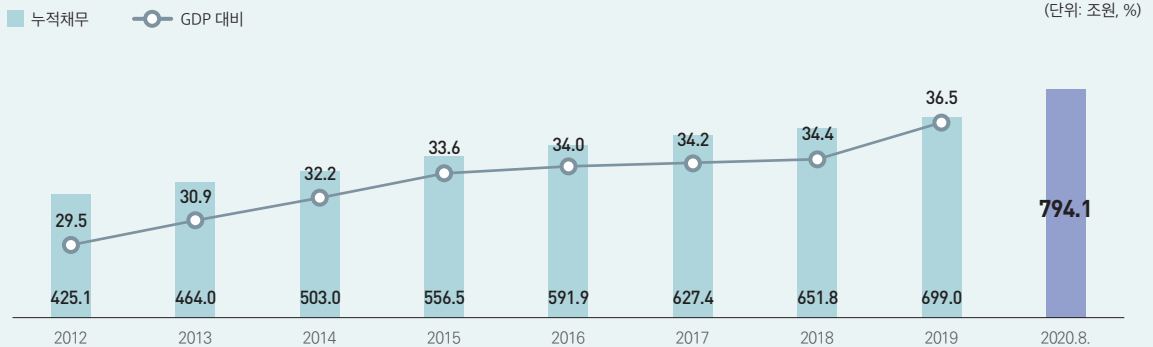
전년 대비

+95.1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국세수입

국세수입이란 14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세금의 수입을 의미하며, 14개의 세금에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수입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

인포그래픽·

웹툰을 통한

소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조세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세금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조세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국세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 상단에 위치한 각각의 탭(현행 조세체계, 조세의 분류, 국세의 조세납기, 납세자 구제권리 등)을 클릭하면, 카테고리별 도표와 그림,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세금에서는 세금(조세)의 정의, 국세의 종류와 함께 지방세 체계 등을 만화 형식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2 국세통계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국세통계 > 데이터자료 >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등 11건

상세재정통계DB > 국세통계에서는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을 포함한 11건의 국세 관련 통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의 세목별 세금 수입 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현황 자료(소재지, 업태별/소득금액, 과세표준, 중부담세액/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신고 현황/세부 업종별 주요항목 신고 현황)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 사업자(지역, 업태)에 대한 현황 자료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링크도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국세통계의 세목별, 단계별 검색과 시계열 자료, 조기 공개, 월별공개 자료 등 국세 관련 다양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	
1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2	법인세 신고 현황(소재지, 업태)
3	법인세 신고 현황(소득금액, 과세표준, 중부담세액)
4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5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6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자)
7	증여세 신고 현황(납세자)
8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9	부가가치율 현황
10	사업자 현황(지역, 업태)
11	국세통계 바로가기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메타정보보기

자료출처	국세통계	이용허락조건	출치표시-변경금지
통계생산기관	국세청	최초공개일자	2018-01-04
설명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SHEET

XML JSON XLS CSV TXT

No	구분	2014년(백만원)	2015년(백만원)	2016년(백만원)	2017년(백만원)
1	국세청 총징수액	204,291,172	217,223,873	243,111,437	266,174,209
2	지방소비세 이계액	7,457,283	7,078,188	8,014,155	8,735,053
3	근로·자녀장려금	776,503	1,717,989	1,622,321	1,768,783
4	물납세액	330,242	266,171	145,839	77,183
5	국세청 세수	195,727,144	208,161,525	233,329,122	255,593,190
6	내국세	174,111,888	185,240,338	209,401,319	230,803,590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류별 생산기관별 자료출처별

통계분류 통계목록 다운로드

필집/단기

예산
지방
지방
지방
국세통계
채무

재정데이터명 국세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국세통계 바로가기
국세통계 바로가기

LINK

연간 국세청

국세통계 바로가기

LINK

총 1건

No	URL	URL명	조회수	등록일자
1	http://stats.nts.go.kr/	국세통계	483	2018-01-04

관련 재정정보

-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 법인세 신고 현황 I (소재지, 업태)
- 법인세 신고 현황(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업태별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국세통계 National Tax Statistics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합니다.

* 국세통계 이용 시 반드시 세목별 귀속연도 확인
(예: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소득세 신고통계는 2018년 귀속분임)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세통계 검색

조기공개

월별공개
사업자현황
카드뉴스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전자책

E-book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획통계

자료실

시계열통계

강기력 추세분석이 용이하도록
시계열 통계 공개

-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국세통계 핵심서 제작, 배포
- 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국세통계	시계열통계	조기공개	월별공개	설문조사	자료실
세목별 검색	세목별 검색	사업자 현황	카드뉴스	설문조사	기획통계
단계별 검색					통계자료실

3 월별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데이터자료 > 국세수입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데이터자료 > 국세수입에서는 각 회계연도별(2014~2020년) 월별 국세수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HEET탭에서 조회를 원하는 대상연도와 대상월을 설정하면, 설정 기간에 해당하는 세목별 예산액(조원), 수입금액(조원), 수입누계금액(조원), 진도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감(조원),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p) 등의 데이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EN API 탭에서는 국세수입 데이터의 ID, 명칭, 설명 등 재정수지와 관련된 OPEN API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자 목적에 맞게 가공·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수입 탭 상세보기

대상연도: 2020
대상월: 7월

No	대상연도	대상월	세목명	예산액(조원)	수입금액(조원)	수입누계금액(조원)	진도율(%)	전년동기대비증감(조원)	전년동기대비진도율(%p)
1	2020	7	총국세	279.7	35.6	168.5	60.3	2.4	-4
2	2020	7	일반회계	271.9	34	163.5	60.2	1.9	-4.1
3	2020	7	소득세	88.5	8.1	48.9	55.3	0.7	-9.3
4	2020	7	법인세	58.5	1.5	30.8	52.7	-0.1	-3.4
5	2020	7	부가가치세	64.6	17.4	48.4	74.9	-1	-2
6	2020	7	교통세	15.5	2.5	8.7	56.4	1.2	1

국세수입 탭 상세보기

변수명: <http://openapi.openfiscaldata.go.kr/incomeTax>

요청제한 횟수: 제한없음

기본인자

변수명	요청인자타입	설명	비고
Key	STRING(필수)	인덱스	기본값: sample key
Type	STRING(필수)	호출 문서(xml, json)	기본값: XML
pindex	INTEGER(필수)	페이지 위치	기본값: 1(sample key는 1 고정)
pSize	INTEGER(필수)	페이지 당 요청 숫자	기본값: 100(sample key는 5 고정)

4 기타 정보

관련 재정법령 →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 > 국세 검색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국세 검색

열린재정에서는 국세수입에 관해 데이터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재정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에서 ‘국세’를 검색하면 국세에 관한 여러 재정법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국세’를 검색하시면 정부의 국세 관련 정책을 담은 1990년 이후 보도자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법령

총 8건

번호	법령명 ▲	법령종류	공표번호 ▲	공표일자 ▲	시행일
8	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2018-12-31	2019-01-01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03-20	2019-03-20
6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2019-02-12
5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대통령령	제358호	1950-05-22	1950-05-22
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26호	2014-01-14	2014-01-14
3	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2018-12-31	2019-01-01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6호	2019-03-20	2019-03-20
1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8호	2019-02-12	2019-02-12

보도자료

총 94건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20-09-01	20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출자관리과	2020-07-10	51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주세법」...		조세정책과	2020-04-05	8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19-08-29	35
[보도참고]문화일보-국세에 관세 포함 백지화		조세정책과	2019-08-27	12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		조세분석과	2018-08-28	33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		출자관리과	2018-08-24	8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독감’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연관어로 ‘예방접종’, ‘독감주사’, ‘백신’ 등이 도출되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국민들의 뇌리를 채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독감



연관어

예방접종

독감주사

백신

무료

접종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바이러스

국민

병원

예방주사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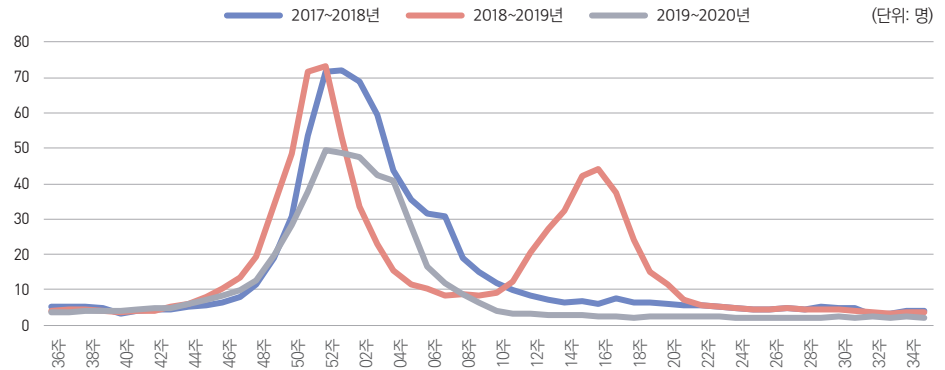
방역

의사

지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시기에 발병률이 높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합병증으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4급 감염병이다.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감염병포털의 인플루엔자 통계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독감 환자 수는 10월(44주)경에 증가하여 다음해 2월(8주)경에 진정되는 추세를 보인다.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분율



주: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

인플루엔자는 발생통계를 주별단위로 제공(전년도 9월 1주~차년도 8월 4주)

자료: 감염병포털(2020), 「인플루엔자 통계정보」 재구성

독감 유행철이 다가오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¹⁾(Twindemic)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감과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한 감염이라는 점에서 전염경로가 비슷하다. 또한, 증상(발열, 두통, 기침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시 유행 시 진단·치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독감에 걸리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정상인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해진다. 정부는 동시 감염으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감염병 예방 관련 주요 재정사업

기존 감염병(결핵,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에 더해 신종 감염병(코로나19 등)의 등장은 국민 건강보호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예산에 더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 예방비용을 추가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방역 지원 패키지(0.2억원)」를 통해 코로나19, 독감 등의 백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하는 물량확보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였다.

¹ 트윈(Twin)과 팬데믹(Pandemic)의 합성어로,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존 2020년 예산에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재정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주요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감염병 예방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단위: 억원)

주요 사업	지출액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255.3
국가 예방접종 실시	3,387.5
감염병 예방관리	111.1
국가 결핵 예방	463.6

자료: 열린재정(2020), 2020년 사업별 사업 설명자료 재구성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255.3억원)은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은 기존 백신의 효능 개선을 통한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백신 개발의 모든 부분을 연계하여 관리한다. 더 나아가, 백신의 국내 자체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기술의 실용화를 이뤄간다.

또한,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은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치료 효과 증진을 이루는 진단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감염병의 조기진단, 현장진단 등 다양한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유입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감염병의 진단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과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치료제 후보물질 검증, 비임상실험 완료 등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가 예방접종 실시(3,387.5억원)는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여, 예방접종 대상의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주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17종²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이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해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정 의료기관이나 전국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관리(111.1억원)는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분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감시체계를 병원급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계획 중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는 물론, 감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 관리도 시행하여 확산 방지를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장, 학교 보건교사 등 실무 인력을 교육하는 감염병 전문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손 씻기 운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 등 온·오프라인으로 감염병 예방을 홍보한다.

▶ 국가 결핵 예방

국가 결핵 예방(463.6억원)은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결핵관리 체계화 △결핵 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 조기 퇴치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협력체계 구축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결핵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결핵 퇴치센터’를 2022년까지 설치하여 결핵 예방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핵정책에 관한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결핵 환자가 중심인 환경을 지원한다. 민간·공공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환자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치료 관리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지원한다. 결핵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는데, 평가지표의 개선과 접촉자 조사범위를 강화하여 가족 접촉자 검진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집단시설 역학조사 기준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조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집중관리 및 고위험군 검진 강화를 통해 결핵의 조기발견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검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노인 및 외국인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층의 결핵검진 수검률도 높아가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장기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 했다.

2 2020년 기준, 인플루엔자(IV),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총 17종의 백신이다.

OECD 중간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OECD는 연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주요국(G20 국가, 한국 포함) 대상의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연 2회(3월, 9월) 추가로 발표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9월 16일 발표된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1. 경제 전망

OECD는 2020년과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각각 -4.5%, 5.0%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6월 성장률 전망치(-6.0%, 5.2%) 대비 2020년은 1.5%p 상승, 2021년은 -0.2%p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성장률 회복은 주요 국가별로 이뤄진 엄격한 방역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표.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p)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Single-Hit)	9월	6월 경제전망대비 조정폭	6월 (Single-Hit)	9월	6월 경제전망대비 조정폭
세계	2.6	-6.0	-4.5	1.5	5.2	5.0	-0.2
G20	2.9	-5.7	-4.1	1.6	5.5	5.7	0.2
호주	1.8	-5.0	-4.1	0.9	4.1	2.5	-1.6
캐나다	1.7	-8.0	-5.8	2.2	3.9	4.0	0.1
유로존	1.3	-9.1	-7.9	1.2	6.5	5.1	-1.4
독일	0.6	-6.6	-5.4	1.2	5.8	4.6	-1.2
프랑스	1.5	-11.4	-9.5	1.9	7.7	5.8	-1.9
이탈리아	0.3	-11.3	-10.5	0.8	7.7	5.4	-2.3
일본	0.7	-6.0	-5.8	0.2	2.1	1.5	-0.6
한국	2.0	-1.2	-1.0	0.2	3.1	3.1	0.0
멕시코	-0.3	-7.5	-10.2	-2.7	3.0	3.0	0.0
터키	0.9	-4.8	-2.9	1.9	4.3	3.9	-0.4
영국	1.5	-11.5	-10.1	1.4	9.0	7.6	-1.4
미국	2.2	-7.3	-3.8	3.5	4.1	4.0	-0.1
아르헨티나	-2.1	-8.3	-11.2	-2.9	4.1	3.2	-0.9
브라질	1.1	-7.4	-6.5	0.9	4.2	3.6	-0.6
중국	6.1	-2.6	1.8	4.4	6.8	8.0	1.2
인도	4.2	-3.7	-10.2	-6.5	7.9	10.7	2.8
인도네시아	5.0	-2.8	-3.3	-0.5	5.2	5.3	0.1
러시아	1.4	-8.0	-7.3	0.7	6.0	5.0	-1.0
사우디	0.4	-6.6	-6.8	-0.2	3.8	3.2	-0.6
남아공	0.1	-7.5	-11.5	-4.0	2.5	1.4	-1.1

자료: OECD(2020),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OECD는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2021년까지 이어지겠지만, 국가별 성장률은 각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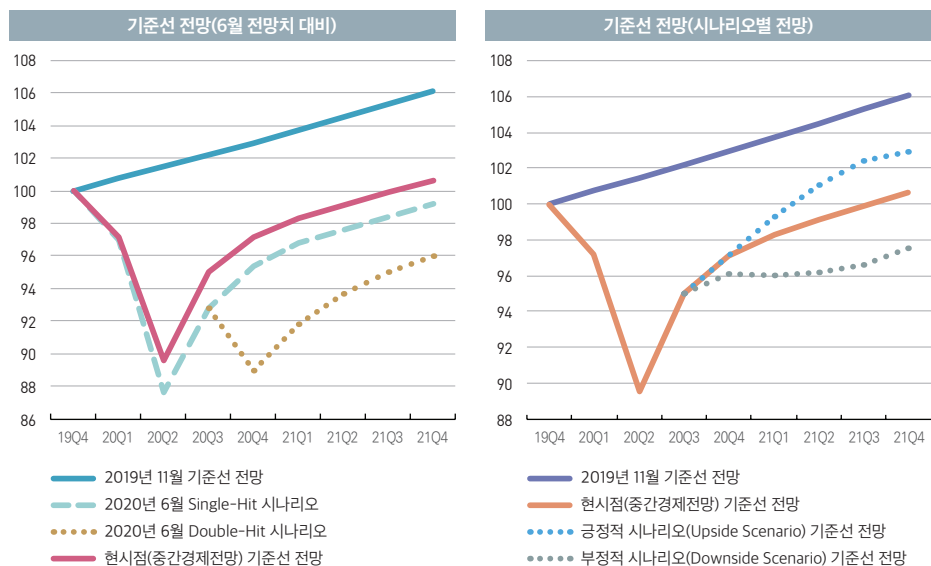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유럽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특히 중국은 G20 국가 중 유일하게 2020년 양(+)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남아공의 경우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 높은 수준의 빈곤율,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의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봉쇄조치(Economy-Wide Shutdown) 없이 바이러스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통제시켜 왔다. 또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점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조정폭은 다른 주요 국가 대비 크지 않았다.

그림 1. 세계경제 기준선 전망

(단위: 2019년 4/4분기 = 100)



주: Single-Hit 시나리오: 코로나19의 재확산 차단을 가정한 시나리오

Double-Hit 시나리오: 올해 10~11월경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및 그에 따른 봉쇄·방역 조치 재개를 가정한 시나리오

자료: OECD(2020),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OECD는 향후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전개, 정책 대응, 경제주체들의 행태 및 심리 변동 등에 따라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긍정적 시나리오(Upside Scenario)와 부정적 시나리오(Downside Scenario)로 나누어 분석¹하였다.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는 현재의 완화된 방역조치만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며,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조기에



¹ 기준선 전망치는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18개월)의 기간에 대한 전망치이며, 2019년 4/4분기(100)를 기준으로 전망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2021년 1분기부터 가계저축률은 1~2%p 감소하는 만큼,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약 2%p 추가 상승한 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부정적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의 심화, 기존보다 엄격한 봉쇄조치 시행, 기업의 파산 및 실업 증대,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증가에 따른 내수위축,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증대 등의 상황을 가정하였다.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재 전망치 대비 약 2~3%p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 정책 권고

OECD는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시행되었던 각 국가별 광범위한 정책 대응 덕분에 심각한 경제 붕괴나 가계·기업 소득의 감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디며, 코로나19의 확산세도 여전하다고 현시점을 평가했다. 이를 고려해 각 국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현재의 재정 및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포괄적 공공방역 조치의 유지 △현 거시경제정책(적극적 통화·재정정책) 기조 유지 △근로자·기업 지원 정책 재정비 및 구조개혁 병행 등 크게 3가지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포괄적 공공방역 조치 유지

각 국가들은 향후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억제하고,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포괄적 공공방역 조치를 지속·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각국 정부는 대규모 진단, 추적, 격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적절한 의료역량을 확충하고, 개인위생 보호장비를 비축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강화 캠페인, 마스크 사용 권장 등의 방역수칙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공방역 조치 유지는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 시 올해 초와 같은 경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봉쇄조치 대신 국지적(Targeted Localised) 봉쇄조치만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며,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 세계적 공조도 필요하다. 현 상황에선 어떤 국가도 순수 국내 자원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 관리에 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경 폐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저렴한 백신 개발과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신흥·개발도상국들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정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

② 현 거시경제정책(적극적 통화·재정정책) 기조 유지

▶ 적극적 통화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많은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인하, 자산매입 프로그램 강화, 금융시장 내 특정 목적성 개입(Targeted Intervention), 금융 시장 신용 공급을 통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 가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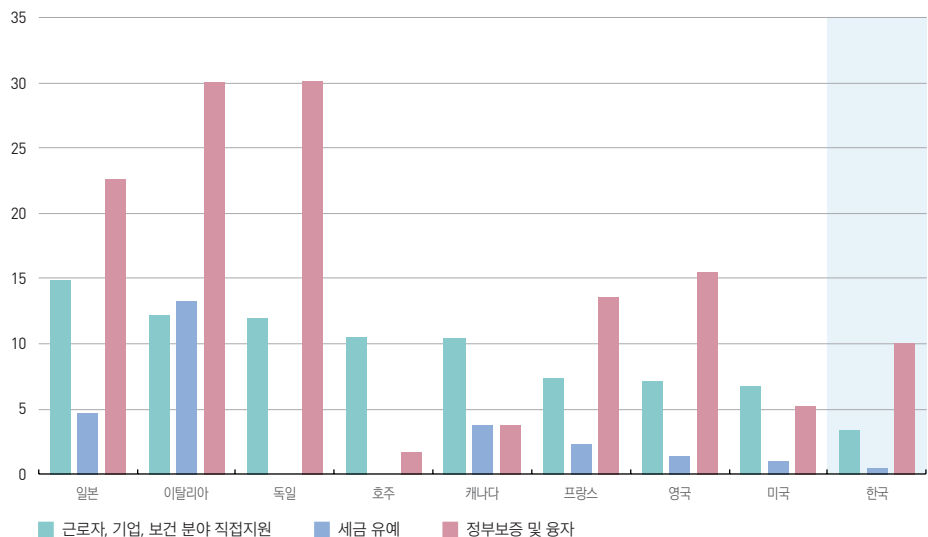
하지만, 대유행 이전부터 이미 낮은 수준이었던 금리와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가 통화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경제 심리 회복, 내수 경제 활력 제고, 대유행 이후 산업 분야 및 가계 내 불평등 완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재정정책을 통한 지속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유행 이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재정투입은 심각한 경기침체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가령 각국 정부의 긴급 조치를 통한 의료역량 확충, 민간부채의 정부 보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관광 및 숙박업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OECD 주요국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주: 1) 9월 14일 기준,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액(긴급 지원 패키지 포함) 추정치

2) 2019년 GDP 대비 비중

출처: OECD(2020),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향후 정부가 재정정책을 조기에 긴축기조로 전환할 경우, 2021년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빠른 긴축 전환 대신, 재정지원 조치들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현재의 재정지원 조치들의 목표 설정 명확성, 집행절차 상 면밀한 모니터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 및 재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 소득 지원 수준을 넘어,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직접 총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기금리가 제로(0)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투자에 대한 조달 비용보다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Social Rate of Return)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고, 시장실패로 투자가 저조한 의료, 교육,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③ 근로자·기업 지원 정책 재정비 및 구조개혁 병행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약화된 투자와 성장률에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대유행 이후, 낮아진 생활수준, 구조적 실업률 증가 및 노동인구(경제활동인구) 감소, 높은 불확실성 및 기업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투자 부진 장기화 등은 향후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격근무로의 전환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증가 등은 미래의 일자리와 사업장의 위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향후 경제 내 노동과 자본의 대규모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구조 전환에 걸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새롭고, 명확한 목표의 정책 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대유행 이후 이루어진 일자리, 소득, 기업 지원 정책들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비생산적인 한계기업(Zombie Firms) 및 일자리가 증가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경제 전반의 총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 회복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번 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오염 집중도가 높은 산업 분야(Pollution-Intensive Sectors)의 경우, 금융지원 요청 시 엄격한 환경 관련 조항 이행 또는 성과 달성 등을 조건부로 제시하여 환경 개선 방향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낮은 가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역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직접투자 시행, 낙후 지역(시골 지역 등) 내 초고속 광대역 설비 구축 등을 통해 광범위한 재택근무 촉진과 더불어 저탄소 기반 사회 구축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5,500여 개로 그 수가 많아 개별 법령의 이름을 다 알기 어렵다.
이에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에서는 법령정보를 전자화하여 찾아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하선우 사무관과 정승택 서기관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Interview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하 선 우
사무관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수집하여 한곳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법령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제정보담당관실 하선우 사무관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 통합하다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은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법제 업무와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전자화하고 있다.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정부입법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그리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등을 운영 중이다.

그중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¹를 수집하여 한곳에 통합 구축한 것으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법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보 내용

을 살펴보면 조문 내용이 실려 있지 않고, 조항을 바꾼다는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조문 내용을 현행화하고, 간편하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법제정보담당관실 하선우 사무관의 설명이다.

“법령정보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행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전에는 공포된 법령을 업데이트하는 데만 25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2005년).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자동화된 법령편집과 검사체계를 갖춘 2010년부터는 공포 당일에 모든 법령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구축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서비스 시

¹ 대한민국 현행법령 및 과거법령, 중앙부처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례 및 행정심판례, 대학 및 공사·공단 등의 학칙·내규 등이 포함된다.

작 이후 법령정보 제공량은 물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58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페이지뷰 수는 1천 2백만건, 데이터 양은 420만건에 이른다. 그만큼 국민의 권리의식 함양으로 법령정보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령정보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420만건에 달하는 법령과 조약,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제정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2020.12.10. 시행)에 따라 법제처가 법령 또는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발전을 거듭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명, 조문 제목, 조문 내용에 대해 검색해 사용할 수 있다. 검색한 법령에 대해서는 신·구법 비교, 법령체계도, 3단비교, 상하위법 연계 등 부가기능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하거나 전자법령집을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법령정보를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앱도 운영하고 있어 그

야말로 ‘내 손안의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업데이트되는 모든 법령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²도 개방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ODA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2018년)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노하우 전수(2019년)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수출 모델을 만들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도 계속해서 교류하는 등 해외 수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령용어, 현행법령, 연혁법령 등 법령정보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령용어로 검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능정보화기술을 반영해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고 일상용어를 법령용어로 자동 변환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검색 결과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추진된다. 이후 연간 일정에 따라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 차세대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국민편의를 위한 리걸테크³ 창업 촉진도 지원한다.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우리나라 법제업무 정보화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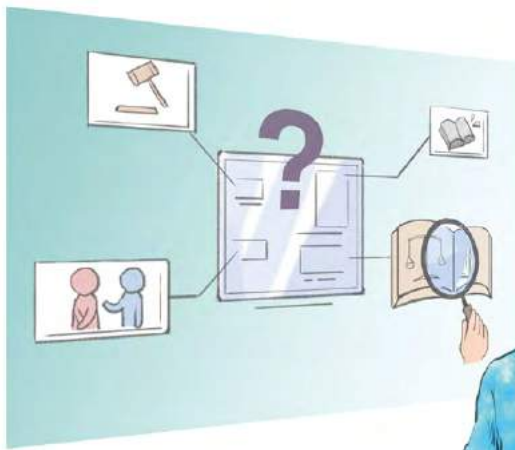
²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하며, 개발자에게 사유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에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한다.

³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비스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및 스타트업과 산업을 의미한다. 리걸테크의 장점은 자동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고객 경험 변화에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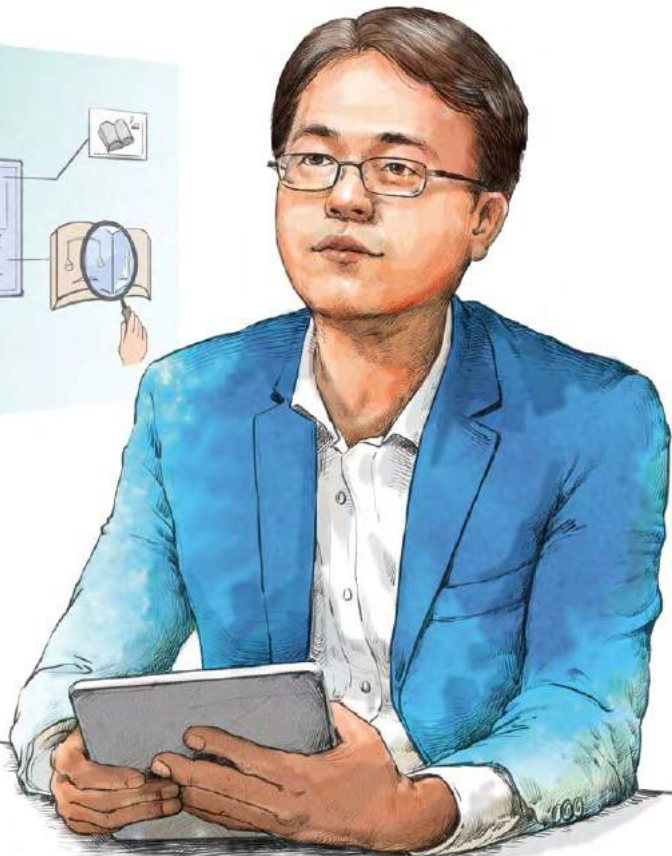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반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등을 위해 우리나라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가정법률, 창업, 소비자, 복지, 근로, 환경, 사회안전 등 18개 분야에서 약 300개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서기관을 만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Interview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정 승 택
서기관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는 각 정부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주제와 관련해 재분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다. 개편 전에는 찾고자 하는 법령 내용이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야 검색이 가능했고, 찾더라도 법령 규정 자체만 제공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다.

“그동안 전문가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법령정보를 일반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서기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업무인 법제 업무를 전자화하고 있으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서비스하는 일

을 총괄하고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면, 궁금한 분야의 법령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 자료와 사례 그리고 판례 등 각종 자료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요.”

2008년에 처음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원클릭 법령누리’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사이트 명칭이 서비스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변경했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300개의 법령정보가 구축됐고 국민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카드뉴스와 Q&A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12개 국어로 번역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도 만들었다. 특히 실제 판례를 재미있게 각색한 ‘솔로몬의 재판’ 코너는 중학교 수업시간에 교육용 자료로도 사용할 만큼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비스 초기에는 일평균 방문자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좌), 앱(우) 메인화면

700명 내외였으나, 현재는 하루에 5.2만명이 넘는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법령정보 업그레이드 그리고 참여형 부가서비스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어려운 법에서 탈피하다

생활법령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고, 주제별 분류를 통해 찾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관심연령·성별·결혼 여부·직업 등 수요자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색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관련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치매노인, 노인복지, 고령자 일자리,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건강 지원 등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발굴한 법령정보를 어려운 문장이 아닌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핵심만 전달하는 카드뉴스형 정보로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 정보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텍스트 중심의 정보에서 탈피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이 바로 카드뉴스입니다. 2016



법은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즉 국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친숙하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부터 꾸준히 개발해 온 결과 현재까지 155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는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 ‘Smart 생활법률’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2020년 4월에는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부문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앱을 개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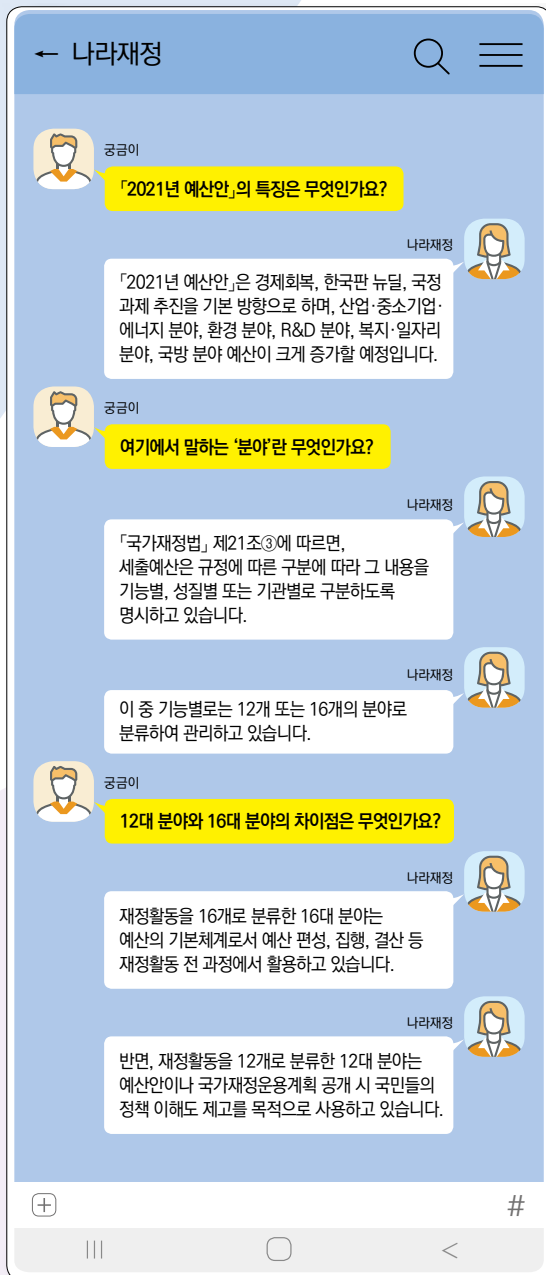
더불어 교육 서비스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에게 가정법률, 비자, 출입국 등 필요한 생활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국을 돌며 교육을 이어나간다.

“법은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즉 국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질 때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친숙하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민을 위한 법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법령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의 기능별 분류란 무엇인가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지난 9월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과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5.7%의 재정지출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2대 분야의 자원배분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정의 기능별 분류, 특히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 예산 편성 방향, 총 규모와 함께 분야별 자원 배분 모습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편성된 555.8조원의 예산이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쓰이는지 보여줍니다. 내년에는 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R&D, SOC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1조③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정의 기능이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활동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합니다. 즉, 정부 재정활동의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 '국방', '교육'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부문으로 세분하게 됩니다¹.

자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12대 분야	16대 분야
보건·복지·고용	사회복지
교육	보건
문화·체육·관광	교육
R&D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과학기술
SOC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교통 및 물류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국방	농림수산
외교·통일	환경
공공질서·안전	국방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통신
	예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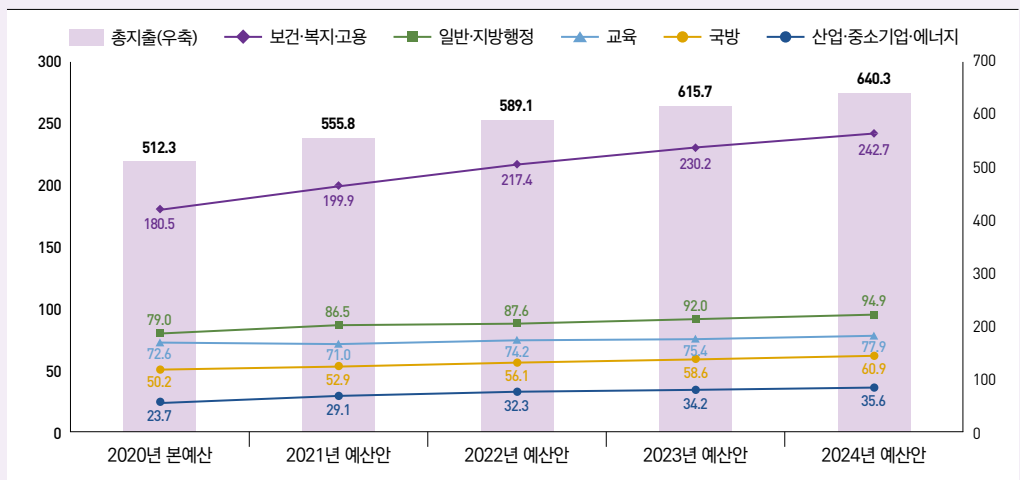
중양정부는 목적에 따라 국가재정을 16개의 분야로 분류하기도 하고, 12개의 분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16대 분야는 예산의 기본체계로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활동 전 과

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16대 분야별 편성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12대 분야는 예산안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시에 국민들이 주요 정책 방향 및 재정운용계획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2020년 512.3조원에서 2024년 640.3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2020년 180.5조원에서 2024년 242.7조원으로 확대(연평균 7.7%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020년 23.7조원에서 2024년 35.6조원(연평균 10.7% 증가)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주요 분야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주: 12대 분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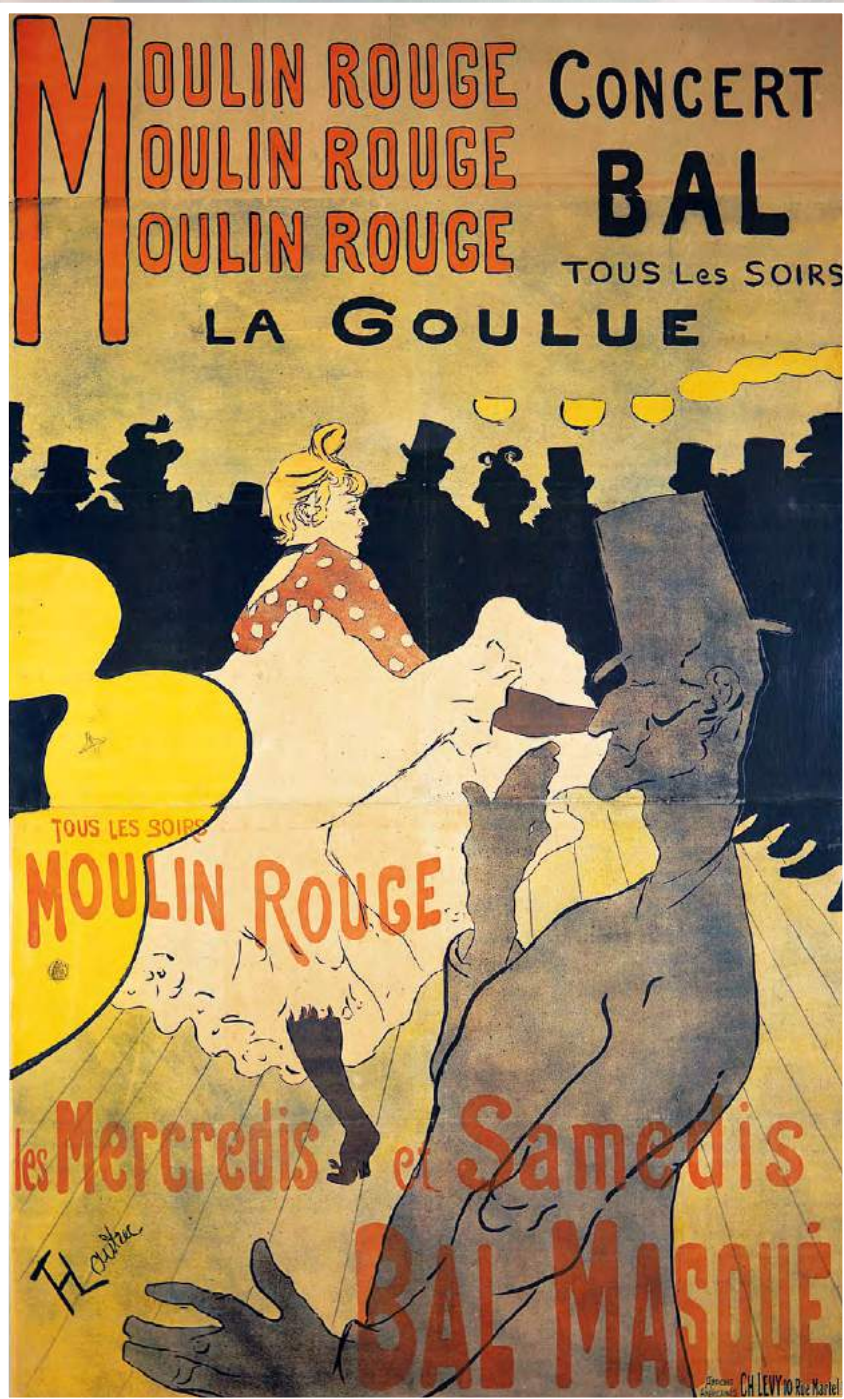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1년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12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툴루즈 로트렉과 상업 포스터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Henri de Toulouse-Lautrec,
<Moulin Rouge: La Goulue>,
1891, Lithograph,
170 × 118.7cm,
Montmartre Museum, Paris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1864~1901)이 파리에
서 활동할 때 파리의 예술계는 자포니즘(Japonisme)이 유행하고 있을 때여서
그 역시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로트렉은 밤무대의 무
희들의 강강 춤을 광고하는 유화와 포스터 같은 작품들을 주로 그렸는데, 그는
자신의 포스터도 석판화로 찍어서 많이 보급될 수 있기를 원했다. 로트렉 이전
에도 복제를 위한 판화는 물론이고, 포스터나 석판화 기법도 있었지만 1890년
대 당시로써는 컬러 석판 인쇄술은 새로운 분야였다. 그는 10년이라는 짧은 기
간 동안 판화작가로서 활동하면서 350점이나 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단지 광고 수단의 포스터가 아니고 예술로 승화된 판화로 미술사
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경지를 이루었다. 요즘 시각으로 돌이
켜보면 로트렉의 이러한 독특한 개성이 담긴 석판화 양식은 현대의 광고 포스
터와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광고 원형을 이미 백여 년 전에 완성해 놓은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화가들은 포스터가 예술성이 낮다는 이유로 잘 그리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포스터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 맞게 그려야 했기
때문에 포스터로는 자신의 기술만 활용할 뿐 자신의 아이디어와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없었다.

로트렉은 초기에는 초상화들을 즐겨 그렸는데 점차 귀족들이나 상류사회 인
물들의 허위와 위선을 풍자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또한 그는 풍경화에는
무관심했으며, 도시의 화려한 카바레나 공연장, 그리고 파리의 뒷골목을 배회
하는 매춘부나 광대 등을 화폭에 담았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대표적인 선전
포스터 <물랭루주 라 굴뤼(Moulin Rouge: La Goulue)>를 보자. 몽마르트르
에 문을 연 대표적인 무도장인 물랭루주 포스터인 만큼 물랭루주 글자체를 세
줄로 넣었고 첫 자인 M을 크게 강조하였다. 게다가 주변의 뭇 신사들의 주목
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희는 당시 파리 무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강 춤을
추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여인이 바로 포스터에도 이름을 써넣을 정도로
유명했던 라 굴뤼(La Goulue)라는 댄서이다. 이 포스터는 로트렉의 첫 번째
채색 석판화였는데 3천장 정도 만들어서 파리 곳곳에 붙였다고 한다.

**포스터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승효과를 유발하는 데 있다.
이것은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다.**



길거리 포스터의 시초인 셈이다.

불우하게 보낸 로트렉의 일생을 다룬 영화들이 꽤 있다. 가령, 2001년에 음악과 화려한 색조가 돋보인 <물랑 루즈(Moulin Rouge)>는 니콜 키드먼이 주연 배우로 등장해서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를 모았던 영화다. 여기에는 로트렉 역시 등장하는데 비중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로트렉의 일생과 그의 내면적 고뇌를 이해하려면 1952년에 제작된 호세 페러(Jose Ferrer)가 주인공 로트렉을 맡은 <물랑 루즈(Moulin Rouge)>를 볼 필요가 있다.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로트렉이 대저택인 그의 집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불구가 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영화 속에서 물랭루주의 매니저는 선전 포스터를 그려주면 한 달 동안 공짜로 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채색 석판화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주며, 그렇게 만든 포스터를 파리 거리에 여기저기에 붙이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로트렉은 매일 밤 댄스홀, 술집 카페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불우한 처지에서 오는 우울함을 밤의 환락가를 전전하면서 해소하려고 했다. 물랭루주는 그의 전속 작업장이었고, 그곳에서의 공연들은 그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카바레의 무용수와 가수, 매춘부와 서커스 단원들의 모습 뒤에 가려진 인간의 비애를 그만의 미적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물랭루주의 무대 뒤에는 로트렉의 열정과 눈물이 숨어있었다. 그는 술과 방탕한 생활 끝에 삼십대에 삶을 마감했다. 그의 생애는 그만큼 드라마틱하다.

포스터라는 용어는 포스트, 즉 기둥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 즉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의 기둥이나 벽에 붙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홍보 게시물에

서 비롯된 것이다. 요새 용어로 말하자면 일종의 소셜미디어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포스터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승효과를 유발하는 데 있다. 이것은 소위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라는 것인데 이는 예전에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오면 어릿광대 복장을 하고 동물들을 동원해서 복이나 나팔, 팽과리 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서커스 공연을 광고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현대에도 흔히 보는 광경은 먹자골목에 가면 사람이 없는 식당보다는 왁자지껄한 식당에 사람들이 더 모이는 현상도 이와 같은 밴드왜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로트렉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몽마르트르 미술관(Montmartre Museum)’에 가보는 게 좋다. 미술관은 몽마르트르 언덕을 지나 더 올라가면 한적한 길이 나오는데, 이 길에는 짐노페디(Gymnopedie)를 작곡한 에릭 사티(Erik Satie)의 집이 나온다. 이 집을 지나면 바로 몽마르트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의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 나온다. 위에서 소개한 전설적인 무용수인 라 굴뤼를 그린 <물랭루주 라 굴뤼(Moulin Rouge: La Goulue)>를 비롯해서 일본 기녀를 모델로 그린 <일본 기녀(La Divan Japonais)>도 찾아볼 수 있다.

로트렉은 언제나 감성적인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배우들과 무희들의 생활에 지친 모습에 연민을 느꼈으며, 술집 손님들의 허식과 무지를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성격을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그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으며, 뒷골목의 추악함까지도 사랑한 화가였다.

영화 <물랑 루즈(Moulin Rouge)>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마치기로 하자. 한 전시장에서 귀부인인 듯한 여인이 큰 소리로 어떻게 여인이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그림을 버젓이 걸어놓을 수 있냐고 항의한다. 로트렉이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 그림은 여인이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을 입는 걸 그린 겁니다. 또 쳐다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 그림에 대한 해석이나 인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제임스 뷰캐넌

헌 법 경 제 학 의 개 척 자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James M. Buchana (1919~2013)

케인스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과 사회주의 등 모든 간섭주의 경제학은 시장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탐욕적이라며 아주 지지분하게 묘사한다. 반면 정치는 공공심에서 국민행복(사회적 후생함수)을 위해 행동한다는 등 아주 깨끗하게 그린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인류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남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차별을 겪어야 했고 기득권자의 독단적 지배에 대한 혐오감을 안고 성장한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 1919~2013)은 인간행동의 그 같은 비대칭적 시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런 관점을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시장실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치실패'라고 주장하여 간섭주의 경제학을 흔들어 댔다.

나라님은 이 세상에 없다

뷰캐넌은 예산을 짜고 나랏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 사람이 공공심이 아니라 소득과 권력, 명예 등 이기심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시장 참여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공공에 헌신하는 '나라님'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국민행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꼬집는다. 그럼에도 정부를 나라님이라고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간섭주의 경제학은 얼빠졌다고 주장했다.

뷰캐넌은 이기심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인간행동을 전제하여 민주주의나 관료, 다수결, 재정, 정당제도, 입법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공공선택론'의 혁명적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발전시켰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재정적자론이다.

본디 인간이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싱글벙글 웃고, 그렇지 않으면 투정 부린다. 그래서 유권자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에서 적자예산은 필연적이다. 흥미롭게도 뷰캐넌은 케인스와는 정반대로 부채의 부담은 전적으로 후세대가 짚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래세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 적자예산에 대하여 반대투표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빚을 짚어 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차 인플레이션을 무릅쓰고 당장 유권자들에게 주는 달콤한 효과 때문에 돈 풀기를 좋아한다. 입법부는 보편적 법보다는 목소리가 크거나 권력이 큰 집단에 유리한 특혜적 입법과 차별적 인허가제도를 생산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가들은 그런 정책들이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경쟁에서 재선 또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적자 속의 민주주의

우리는 정치가의 그런 행동을 위선적이라고 비난한다.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매우 크다. 정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뷰캐넌은 정치인들의 사람 됨됨이를 보지 말고 나쁜 행동을 유도하는 정치제도를 보라고 충고한다. 정치인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뷰캐넌은 일본, 미국, 독일 등 현대사회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도 민주정치 제도 탓이라고 강조한다. ‘적자 속의 민주주의’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뷰캐넌이 주목한 것은 이 같은 정치실패(민주주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이다. 여기에서 그는 헌법(憲法)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헌법경제학’을 창시하여 발전시켰다. 그 핵심 논리는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치체제의 왜곡으로 나쁜 법이 제정되고 재정 팽창과 적자가 늘어나는 등, 정치 실패로 결국 시장경제를 뒤흔리게 하여 실업이나 불황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뷰캐넌의 헌법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이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스위스가 헌법에 세율 인상 한계와 지출한도를 정한 것, 독일이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적자예산의 한계와 경쟁적 연방주의를 도입한 것 등 모두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아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뷰캐넌 사상의 힘이다.



뷰캐넌이 개탄하는 것은 현대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없고 그래서 '원칙의 정치' 대신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도 운영하고 법도 마구 찍어 낸다는 것이다. 뷰캐넌의 사상은 20세기 중반 이래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그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는 보잘것없이 쉽게 잊히는 노벨경제학 수상자가 아니라 위대한 수상자임에 틀림없었다. 기존의 헌법을 바꾸지 않은 한,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뷰캐넌이 찾는 것은 인류가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의 헌법'이다. 이것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뷰캐넌의 입지전(立志傳)의 최고 절정이다.

재정헌법을 통한 적자 억제

뷰캐넌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헌법 규칙을 제안했다. 방만한 통화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준칙주의를 헌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의 조세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단일세율제도, 그리고 세율, 정부 지출, 예산적자 등의 한도를 정한 헌법 규칙, 차별적인 입법을 금지하기 위한 법치주의를 헌법에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뷰캐넌의 헌법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이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스위스가 헌법에 세율 인상 한계와 지출한도를 정한 것, 독일이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적자예산의 한계와 경쟁적 연방주의를 도입한 것 등, 모두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아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뷰캐넌의 사상의 힘이다. 한국 사회도 최근 부채가 급증했다. 예산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적자 문제의 해결에 뷰캐넌의 재정헌법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빅데이터, 돈을 읽다

01

-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는 어떻게 초일류 기업이 되었는가?

지은이

데이비드 스티븐슨

-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IT 컨설턴트이자 연사인 데이비드 스티븐슨은 데이터 과학과 애널리틱스 분야 전문가로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 등에서 강의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20년 넘게 관련 업계에서 전문 고문 역할을 해왔다.

옮긴이 장진영

출판사 동아엠앤비

발간일 2020년 9월 25일

66

빅데이터는 더 이상 빅데이터가 아니다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회사 가트너는 2015년 신기술 마케팅 브랜드 보고서에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삭제했다. 빅데이터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뜻에서다. 이 책 역시 빅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표기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이제 특수계층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저자는 20년 넘게 관련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0억달러에 이르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도운 경험과 지식을 소개한다. 1부에서는 아직 빅데이터가 낯선 이들을 위해 빅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실패와 성공 사례를 다룬다.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이 책에 담긴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를 알아 가보자.

제1부 빅데이터의 이해

- 1장 빅데이터 이야기
- 2장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 3장 빅데이터는 왜 유용한가?
- 4장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사례
- 5장 빅데이터 생태계의 이해

제2부 빅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 6장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전략
- 7장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전략의 수립
- 8장 데이터 과학의 활용 - 애널리틱스, 알고리즘, 머신러닝
- 9장 빅데이터 기술의 선택
- 10장 팀의 구성
- 11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법률 준수
- 12장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언택트 비즈니스

- 100년의 비즈니스가 무너지다

02

지은이

박경수

- 저자 박경수는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을 졸업한 후 경영컨설팅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이낸셜뉴스>에 혁신습관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출판사 포르체

발간일 2020년 7월 3일

KPFIS's
library

66

비대면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다

언택트는 사회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비접촉, 비대면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지금까지 쌓여온 비즈니스의 궤도는 크게 변하고 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태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대면 트렌드를 쉽게 풀었다.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컨설턴트인 저자는 언택트와 관련된 국내외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홈블랙홀', '핑거 클릭', '취향 콘텐츠', '생산성 포커스'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만들었다. 또한 각 키워드와 연결되는 뉴 비즈니스 모델도 소개한다. 현재 언택트 비즈니스 시장에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여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적인 통찰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뉴노멀을 지나 디지털 라이프 비즈니스의 사이클을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기획의 편에 선다면 변화를 기회로 이끌어갈 수 있다.



프롤로그 100년의 비즈니스가 무너지다

- PART 1 검은 백조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 검은 백조는 언제나 출현할 수 있다
 - PART 2 홈 블랙홀: 홈루덴스, 스마트홀이 아닌 홈스마트 시대를 열다
 - PART 3 핑거 클릭: 디지털, 오프라인의 성을 무너뜨리다
 - PART 4 취향 콘텐츠: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포노 사피엔스
 - PART 5 생산성 포커스: 디지털 조직, 스마트 퍼포먼스를 꿈꾸다
 - PART 6 언택트 비즈니스 인사이트: 디지털 라이프 시대 전략을 제시하다
- 에필로그 언택트 시대,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재정**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0년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ADB, 9.15.)

- 아시아 45개 회원 경제의 2020년 성장률은 -0.7%(6월 전망 대비 -0.8%p), 2021년 성장률은 +6.8%(6월 전망 대비 +0.6%p)로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은 -1.0%, 2021년 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과 3차 추경 등으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9.16.)

- 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5% (6월 전망 대비 +1.5%p)로 전망. 한국의 경우, 2020년 성장률을 -1.0%(6월 전망 대비 +0.2%p)로 전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 G20 중 2위 예상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정부, 9.22.)

- 정부는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④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⑤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를 위해 4차 추경예산 7.8조원을 포함한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정부, 10.5.)

-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①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준칙성 ② 경제위기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성 ③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두고 설계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의 추석 명절 선물 나누기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23일(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여름부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 등 지속적으로 남산원을 후원하고 있다. 남산원 박흥식 원장은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는 후원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덕분에 올 추석 명절 차례상을 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한국재정정보원의 주거래은행인 농협은행도 지난 여름 봉사활동에 동참한 인연을 이어, 우리 농산물 등을 함께 기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개발도상국 대상 온라인 맞춤형 컨설팅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재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맞춤형 컨설팅’을 9월 22일부터 29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했다. 참여국은 세계은행 회원국인 △베트남 △부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등 총 4개국으로 각 국가의 재정 담당 공무원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대상국별 주요 관심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실시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국고금 통합관리, △원인 행위 관리, △재정통계분석, △정보보안,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소개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 원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한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우수성과 구축·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고 참여 국가의 재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한 단계 앞당길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맞춤형 컨설팅 대상국을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회원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국제금융기구 대상 웹 기반 컨설팅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는 8월 21일과 9월 24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국제금융기구(WB, IDB)를 대상으로 웹 기반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경험 및 K-방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국제금융기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국면하에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WB 공식블로그:

<https://blogs.worldbank.org/governance/five-lessons-south-korea-securing-business-continuity-during-covid-19>

* IDB 공식블로그:

<https://blogs.iadb.org/gestion-fiscal/en/financial-management-operations-under-covid-19-pandemic-the-korean-experience/>



한국재정정보원,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8일부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에 대해 모바일 간편결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비플제로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재정정보원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다. 0.8~1.9%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0.0~0.5%의 낮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국가재정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소상공인 수수료가 절감되는 이번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상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월간 나라재정〉을 구독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월간 나라재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 2020년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당첨자 발표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11월 중)

설문조사 참여방법 QR코드 또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 후 참여



<http://naver.me/GJ3lwvH>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하여
따뜻한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10. 22. ~ 2020. 11. 13.

문 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POSTCARD



9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총지출

☆ 상품 당첨자

you*****@hanmail.net
73m***@gmail.com
del****@daum.net
wcr****@hanmail.net
min*****@naver.com
haj*****@daum.net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재정관련 정책이나 통계 등을 접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 요즘 나라재정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재미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9월호에서는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코너가 재미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시대상을 <전함 테메레르>, 이 한 폭의 그림이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알게 되어 흥미롭고 놀라웠습니다.

you*****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